

일상 속 **부패**를 **캠**
마음 속 **청렴**을 **캠**

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 · 확산



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제도 도입

1 추진배경 및 필요성

사업 특성	기업지원, 공공개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간 기업정보 및 부동산정보 취급 → 해당 업무의 단기 급속 확장 ¹⁾ 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 위험 증가
사회 이슈	공기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주식 투기 등 부패사건 지속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 · 우려 증대 → 유사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
대내 현황	부동산 내부통제 방안 旣 마련(신규취득 제한제도, 재산등록 등) 금융투자상품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체계적 통제 시스템 無
대외 지적	국정감사 민간 기업 내부정보 접근 可 → 임직원 주식보유 및 거래내역 관리 필요 금융위 감사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요구

1) 기업부문 투자규모 '18년 3,847억원 → '24년 10,851억원(기관 전체 투자예산의 54%) / 수행인력 '18년 75명 → '24년 136명

✓ **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하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적인 정보를 활용한 사익추구 근절 도모**

2 주요 추진내용

① 추진기반 강화 ¹⁾전담 조직 신설, ²⁾CEO 주재 회의체 운영으로 **리스크 관리 기틀 마련**

전담 조직	통제 기능 일원화 → 리스크 관리 강화	추진 기구	CEO 주재 추진단 → 추진동력 확보
감사실 반부패·청렴	준법 경영실 반부패·청렴, 윤리경영	+	• 청렴윤리 향상 특별 추진단(단장 CEO) 정기 운영 → 기관장 주도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견인
ESG실 윤리경영	+ 내부통제 총괄		

② 리스크 분석 ¹⁾보유 기업정보 전수 조사, ²⁾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한 **위험 분석**

전수 조사	업무상 기업정보 보유현황 점검	리스크 평가	기업정보별 투자가능성 평가
• 보유 기업정보 현황, 보유 목적 등 일괄 점검 → 총 798개社 정보 목록화 (경영현황, 주주명부 등)	+	• 보유정보 활용 투자가능성(위험 수준) 평가 → 3단계 위험도 분류 (고 39%, 중 6%, 저 55%)	

③ 통제방안 수립 現 법령·내규상 의무 대비 강화된 **선제적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**

기 존	개선 방향
• 법상 의무 대상 임직원만 적용 • 계좌 개설 신고의무 외 제한 無 • 자진신고 기반 비정기 점검	• 기업정보 보유 부서 전반으로 확대 → 루프홀 방지 • 타기관 벤치마킹, 외부 자문을 통한 금융상품 매매 제한 방안 수립 • 보유 기업정보, 보유·매매 확인서 기반 정기 점검

✓ **수립된 통제방안에 대해 직원 간담회 등 집중 내재화 실시로 제도 조기 정착 도모**

3

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장애요인 ① • 법상 직접적 근거 없는 매매 제한으로,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직원 반발

극복방안 ①

- 법령 · 내규 위반 불이익을 방지하여 임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적극 안내
 - 기관장 주재 회의, 메시지 전파 등 적극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
 - 경영진으로부터 이어지는 릴레이 실천 서약 등 고위직 솔선수범
 - 제한부서 직원과의 10차례 이상 대면회의 등 소통·설득 노력

기관장 소통



기관장 주재 회의 등 적극적인 소통·의지 피력

고위직 솔선수범



조경영진 및 관리자의 '솔선수범' 실천 서약



제한 대상 부점장의 매매 제한 준수 서약

구성원 설득



제한 대상 직원 대면회의 등 설득노력

장애 요인 ② • 기업정보 내부통제 경험 부족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저조

극복 방안 ②

- 내부통제 선진 기관과의 합동 워크숍(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) → 제도운영 벤치마킹
-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통제방안 고도화(회계사, 변호사, 교수 등)

선진기관 벤치마킹



외부전문가 의견수렴



- [선진기관] '주식 취득 신고제도 운영' 벤치마킹
→ 보유매매확인서 징구 등 **캠코형 취득 점검제도 도입**
- [외부전문가] "인사이드에 따른 기업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필요" 권고
→ **시스템 권한 정기점검제 도입**으로 민감정보 관리 철저

4

주요 추진성과

① 강화된 내부통제 제도 도입

선제적·적극적 금융투자상품 거래 「3단계 통제 시스템」 구축

[1] 점검 체계 신설

기 존

- 점검 체계 無
- 자진신고 기반 비정기 수시점검 (거래내역 확인 無)
- 위반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불명확

개 선

- [의무부여]** 매매 제한 준수 서약서 수령으로 **준수의무 부여**
- [정기점검]** 보유 기업정보(798개) 기반 ①**보유·매매 확인서 수령**, ②**부정취득 점검**(반기), ③**전출시점까지의 내역 점검**(전출 시)
- [위반 시 조치]** 위반행위 발생 시 **처리 절차 정비 및 상시운영**

제한부서

현황파악/신고

총괄부서(준법경영실)

조사/기관장보고/감사의뢰

✓ 캠코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제한 기관이 아님에도 유사 수준의 고강도 제한 조치 시행

	기 존	개 선
[2] 제한 대상 · 의무 확대	· (대상) 펀드 운용 관련 임직원(12명) · (의무) 계좌개설 시에만 신고의무	· 기업지원, 증권 업무 수행 소직원(154명) · 계좌개설 + 상품 매매·보유 시 신고의무
[3] 보유 정보 관리 강화	· 기업 정보 수기 관리(엑셀 등) · 시스템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미흡	·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(전산화) · 기업정보 접근 권한 정기점검 (반기별)

② 매매제한 위반 ZERO 제도 시행 후 총 2회 정기점검 → 직무 관련 금융상품 취득 無

- 8개월 간 준수 서약서 178건, 금융투자상품 보유·매매 확인서 314건 수령 및 점검
- 집중적 내재화 노력을 통한 제도 단기 정착 → **선제적 금융상품 자진매각 우수사례 조기 발굴**

[총괄부서] 제도 도입 후
집중 홍보 등 내재화 노력

[A직원] 신규 지원 후보
B기업의 주식 보유 인지

[A직원→총괄부서]
신고·상담

[A직원] 직무 관련 기업 편입 전
B기업 주식 전량 선제적 매각

✓ 제도 도입 후 매매제한 위반 등 부패사건 ZERO, 자진매각 우수사례 발굴

③ 기업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 관리 전산화 및 민감정보 접근 권한 관리 강화

	기 존	개 선
정보 관리	· 업무별 기업정보 수기 작성 및 개별 관리 → 체계적 관리 체계 無	· 기업정보 등록 전산화, 관리 일원화 → 정보 임의 조작, 데이터 누락 방지
접근 권한	· 정보 접근 권한 관리체계 미비	· 업무별 접근권한 개별 부여 및 이력관리 → 접근권한 통제 및 사후점검 강화

【아쉬운 점】 통제방안의 법률등 근거 미약,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상 제약으로 강제력·실효성 한계

- ① 직무 관련 상품 보유·취득 시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미비(매각, 거래금지 등 강제조치)
- ② 고의적 위반, 확인서 허위 제출, 타인명의 매매 등의 경우 적발 곤란

【개선 방향】 ① **내부**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·취득 시 사후조치(거래금지, 신규취득 시 자진매각 등)를 위한 지침 수립 및 근거 내부규정 마련(2025년 검토 중)

- ② **외부** 공직자윤리법,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직무 관련 금융상품 매매 제한 근거 마련 및 개인정보 이슈 해소 → 금융상품 거래 내역 모니터링 제도 도입

5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‘미공개 내부 정보의 사적이용 방지’는 업무상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공통적 고민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캠프의 추진 내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함
- 특히, 금융상품 매매를 포함한 내부자거래 통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, 최근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**소 금융권**에서도 함께 관심을 집중해야 할 문제 이므로, 이를 확산하여 **공공·금융권 전반의 투명성·신뢰성 제고**를 도모하고자 함

✓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☒	아니오 ☐
✓ 과제 제출 년도	'22년 ☐	'23년 ☐ '24년 ☒
✓ '22~24년도 미평가기관으로 자율과제로 제출 여부	예 ☐	아니오 ☒